

오리온

사업 파트너사 행동규범

Version 1.0

목적

오리온은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더 나은 삶과 미래(Right Way, 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임직원은 물론, 당사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사업 파트너사 임직원들도 법적, 윤리적 기준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돕고자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오리온 사업 파트너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경영, 친환경 경영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과 거래하는 모든 사업 파트너사는 본 행동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자신들과 거래하는 파트너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준수 가이드라인

오리온의 사업 파트너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격차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활동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오리온은 사업 파트너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지정 외부기관을 통해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및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위반사항 및 예상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사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사업 파트너사의 의무사항 모두를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사항은 오리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윤리경영

사업 파트너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따르며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1) 사업 청렴성

- ① 사업 파트너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 ②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정 거래

- ① 사업 파트너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급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담합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 ① 모든 업무 및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사업 파트너사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사는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4) 지적재산 보호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리온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정보 보호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사업 파트너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 ① 법률에서 보장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책임있는 원부재료 조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원부자재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에 대해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2. 인권경영

사업 파트너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는 물론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 ①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아동 노동 금지

- ①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근로 시간

- ① 근로 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제외하고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 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임금은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5) 차별/괴롭힘 금지 및 인도적 대우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승진, 보상, 교육기회 제공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또는 국적,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 ② 사업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① 사업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해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② 근로자가 차별, 보복, 위협,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경영

사업 파트너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사는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안전보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안전보건

- ① 근로자가 안전보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위해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및 이들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 방안

- ①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3) 산업 재해/질병 및 위생 관리

- ①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②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 ③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위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요인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4) 위생 및 시설 제공

- ①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사업 파트너사가 직원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고 적절한 비상 출구, 위생, 조명, 환기,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 등을 제공하고 적절한 출입 통제 장치가 마련된 합리적인 크기의 개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6) 안전보건 교육

- ① 사업 파트너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환경 경영

모든 비즈니스 기능에 걸쳐 사업 파트너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사업 파트너사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허가 및 보고

- ①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 ①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또는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② 공정개선,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 개선노력을 통해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관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한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파악하여 해당물질의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② 사업 파트너사는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폐기물 관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 처리한 뒤 배출, 폐기되도록 관리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대기 오염 관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련 법률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6) 수자원 관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 기준에 따라 사용 및 배출하는 수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 ① 사업 파트너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표준 및 협약:

- ILO 기본 협약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 1930년 강제노동 협약(제29호)
 - 1957년 강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
 - 1973년 최소 연령 협약(제138호)
 - 1999년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제182호)
 - 1999년 동등보수협약(제100호)
 - 1958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 및 2006년 진흥기본법(제187호)
- 분쟁 영향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국제연합(UN)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 세계인권선언
- UN 부패방지협약
- UN 아동권리협약
-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UN 글로벌 협약
 - 기타 유용한 참고 자료:
-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 환경경영감사제도
- 윤리적 상거래 이니셔티브
- ILO 안전보건 실행규범

- ISO 14001 및 관련 표준 – 환경 관리
- ISO 45001:2018 - 산업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 미국 화재예방협회
- 국제사회책임기구(SAI) – SA8000
- 미국 연방조달규정